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
국토교통부

국 토 교 통 부

힘내라 대한민국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알림

1. 평소 국토교통행정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.

2. 우리 부에서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 코로나-19 등으로 정상적 시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대규모 감염병·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 시기를 변경·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발급 신청, 건설기계 양도·양수 신고 등과 관련한 절차 간소화, 건설기계 조종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면허증 서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('20.10.26~12.7)하였으니 널리 알려주시고, 관련업무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수신자 사단법인 한국크레인협회,(사)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교육원,안전보건진흥원 이사장,사단법인 한국안전보건협회,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,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,대한건설기계협회,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,(재)건설산업교육원,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,(사)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

주무관	방현민	공업사무관	유연형	건설산업과장	전결 2020. 10. 28. 김광림
협조자					

시행 건설산업과-8114 (2020. 10. 28.) 접수 M00001330926 (2020. 10. 30.)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/ http://www.molit.go.kr

전화번호 044-201-3545 팩스번호 044-201-5547 / skybang4133@molit.go.kr / 대국민공개